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1 선고 2021가단1014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찬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2018. 1. 11.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8. 1. 11. 접수 제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00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무렵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이 위 판결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38376호로 지급명령신청(일부청구)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7. 12. 22.자 지급명령이 2018. 1. 12. 확정되었다.

위 채권의 원리금은 2021. 3. 2. 기준으로 1,090,841,727원(원금 220,822,898원)이다. 다.

별다른 재산이 없던 C은 2015.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8. 1. 11. 누나인 B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강제경매에서 2019. 5. 16.경 이루어진 감정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62,438,000원이었다.1) 마. 원고는 2021. 3.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2018. 1. 11.자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2019. 3. 12.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참조).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대입하여 보면 원고는 2019. 3. 12., 늦어도 2019. 5. 16.경에는 C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원고는 늦어도 2019. 3. 12.에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다.

2) C은 10년 넘게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C의 재산상태를 계속하여 조사하여 오던 중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발견하고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원고도 알게 된 2019. 5. 16.경에는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C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위 2)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는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4) 원고는 피고가 C의 누나라는 사실을 2021. 1. 18.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존재를 추인하는 사정일 뿐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소 각하

판사 김한철

별지

목 록

1. 경남 의령군 H 답 387㎡
2. 경남 의령군 I 전 533㎡
3. 경남 의령군 J 도로 22㎡,끝,

1) 한편 C은 2015.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의령군 F와 G 중 각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각 지분에 관하여도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각 지분에 관한 감정가는 7,461,910원, 20,435,100원이다.